

CRIMINAL PROCEDURE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GUIDE BOOK FOR VICTIMS



1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형사소송절차를 시작하는 피해자들에게

- 1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잘못된 것은 가해자이고, 그는 당신이 신고하고 고소했기 때문이 아니라 범죄를 저질렀기에 처벌받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도 말고, 가해자를 포함한 다른 이들에게 죄책감을 느끼지도 마세요.
- 2 **당신 스스로를 지키세요.** 당신의 상태와 상황을 최우선으로 두고, 자신에게 집중해야 합니다. 당신 자신을 믿고 본인의 마음에 귀를 기울여야 스스로를 지킬 수 있습니다.
- 3 **주변에 의지하세요.** 당신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더라도 홀로 하는 싸움은 버거울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주변을 둘러보세요. 당신을 존중하고 당신의 목소리를 들어줄 사람들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가까운 이들이나 성폭력 상담기관 등 외부기관에 도움을 청하세요.
- 4 **추가 피해가 발생하면 외부에 알리세요.** 가해자나 그 주변으로부터 추가 피해를 입게 되면 연대자, 피해자 변호사, 경찰 수사관, 검사, 판사 등 형사절차를 함께 하고 있는 이들에게 반드시 알리세요. 외부로 알려야 보호받을 수 있고, 가해자에게 적절한 처벌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 5 **용서는 오롯이 당신의 마음에 달려 있습니다.** 원하지 않는다면 용서하지 마세요. 사과 역시 받아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피해자이고, 피해자는 원하지 않은 가해자의 행동을 거절할 권리가 있습니다.
- 6 **일상을 다시 만들어 나가세요.** 형사절차는 긴 호흡이 필요하고, 그 과정에서 당신의 일상은 예전과는 달라질 겁니다. 그 먼 길을 걷기 위해서라도 달라진 자신의 상황과 상태를 받아들인 후 일상을 찾으려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힘들면 주변에 도움을 청하세요.
- 7 **완벽하거나 무결한 피해자가 되려 하지 마세요.** 의심받고 입증을 강요당하는 상황에 계속 노출되면 '피해자다운 피해자'가 되려는 압박이 시달리기 쉽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인간이고, 인간은 실수하거나 잘못할 수 있으며, 다양한 욕구와 욕망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 8 **호흡을 가다듬고 기다리세요.** 형사절차는 느리지만 확실한 길입니다. 그 과정은 지난하고 고통이 뒤따를 수 있지만 언젠가는 반드시 끝납니다. 그러니 그 길을 따라 끝까지 걷기 위해서라도 스스로를 잘 챙기고, 주변에 도움을 청하며, 차분하게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주의사항

피해자노트는 피해자들이 홀로 형사소송절차에 임하는 것을 권하기 위해 만들어진 노트가 아닙니다. 전문가(피해자 변호사 등)와 지원 기관(성폭력 상담소 등)의 도움을 받는 것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시고 도움을 받을 수 없는 불가피한 상황에서만 **피해자를 위한 최소한의 나침반**으로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피해자노트는 **장애가 없는 성인에 대한 일반 성폭력 사건**을 전제로 만들어졌습니다. 피해자가 미성년자, 장애인이거나 디지털 성폭력 사건인 경우 해당 노트 사용에 각별한 주의를 요합니다.

1

증거 확보하기



피해사실 및 사건 정황을 설명해줄 수 있는 물적, 인적 증거를 확보하여 정리

가

공동사항

	사건과 관련해 본인이 참여한 모든 대화(대면, 전화 포함)는 녹음 하세요.
	사건 이후 병원, 상담소 등 기관에 방문하는 경우 진단서, 상담사실확인서 등 공식기록을 발급 받으세요.
	사건 전후 가해자, 친구, 가족, 상담사 또는 그 외 제3자 등과 사건에 대해 대화한 내역은 날짜와 함께 캡처 해두세요. (절대 대화방을 나가거나 삭제하지 마세요!)
	사건 당일 신용카드 사용내역, 모텔 결제 내역, 지하철/택시 결제 내역 등 사용한 영수증을 확보 하세요.
	사건이 발생한 장소, 사전 발생 전 들렀던 가게 등의 CCTV 확보 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면, CCTV가 설치된 곳의 시설 담당자에게 본인이 나온 영상을 복사/촬영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만약 거절한다면 경찰에 사건을 신고할 예정이니 수사관이 요청할 때까지 해당 날짜의 CCTV 영상기록을 보관해달라고 요청하세요.)

나

발생 후 72시간 이내인 경우

	몸을 씻지 말고 해바라기센터에 방문하세요. (응급키트를 이용해 증거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사건 당일 입었던 옷은 세탁하지 말고 종이봉투에 그대로 보관하고, 특히 속옷은 펼친 상태로 자연건조해 각각 분리해 보관하세요.
	몸의 상처 등 신체에 남은 흔적이 있다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찍어두세요. 가급적 즉시 병원에 방문하여 피해사실을 알리고 진단서를 발급받는 것이 좋습니다.

다

가해자와 관련된 증거

	사건 전후 가해자와 통화하거나 문자메시지, 이메일, 채팅 등을 통해 연락했다면, 그 내용을 모두 날짜와 함께 캡처하거나 녹음 해서 확보해두세요. 중요한 정황증거가 됩니다.
	가해자가 사과를 하거나, 내가 가해자에게 사건에 대해 항의하는 등 서로 사건에 대해 언급한 내용 을 녹음하거나 캡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TIP. 녹음의 경우 본인의 목소리가 들어간 녹음은 불법이 아닙니다. 자신이 참여한 대화는 상대방의 동의가 없더라도 녹음할 수 있으니 사건과 관련된 대화를 할 땐 녹음되고 있는지 꼭 확인하세요. (통화녹음이 되지 않는 휴대폰을 사용하고 있다면 사건을 진행하는 도중만이라도 녹음이 되는 휴대폰을 사용하길 권합니다.)

2

사건 정리하기



기억나는 것과 나중에 알게 된 것을 분리하며 사실관계 정리하기 + 손해 측정하기

가

피해사실 정리(본인이 기억하는 것)

- 사건 당시 상황에 대해 명확하게 기억하고 있는 내용을 기록하세요.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 것은 기록하지 않아야 하고, 객관적인 증거(영수증 등)와 기억이 다르더라도 우선 기억나는 대로 기록합니다.
- 시간이 흐르면서 부정확해지거나 분명해지는 기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정리해 둔 내용을 그때그때 수정하는 게 아니라 이미 작성한 메모 **아래에 날짜와 함께 추가하는 방식**으로 정리하세요.

-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가 아니라, **어떤 사실이 있었는지**를 먼저 정리해야 합니다. 주관적인 감정이나 나의 판단보다는 **기억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실관계** 위주로 정리하세요. 추후 생생한 진술을 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예시	
x	갑자기 스킨십을 해서 매우 당황스러웠다.
o	가해자가 본인의 왼손으로 내 오른쪽 어깨를 약 1분 가량 주물렀다.
x	짜증나고 아팠다.
o	다음날 허벅지 앞쪽이 매우 당겨 출근길 지하철 계단도 제대로 오르지 못해 짜증났다.

TIP 1. 육하원칙에 따라 정리하되 **숫자**를 많이 사용해보세요(**날짜, 수량, 기간, 금액** 등).

TIP 2. **시간, 장소, 가해자에 대한 정보 및 피해자 본인과의 관계, 사건 내용, 목격자 여부, 본인의 대응 및 행위자의 반응, 그 외 사건 발생 전후 상황** 등이 포함되면 좋습니다.

나 피해사실 정리(나중에 알게 된 것)

- 증거를 정리하다 보면 **객관적인 증거**를 통해 새로운 사실을 알게 됩니다.

예시	
-	가해자가 계산했다고 기억하고 있었는데, 신용카드 사용내역(객관적인 증거) 을 보니 내가 결제한 내역이 있음.
-	택시를 새벽에 탄 것 같은데 택시결제금액(객관적인 증거) 을 보니 저녁에 결제했다고 나옴.

- 그럴 땐 **정확히 본인이 무엇을 기억하고 있는지** 생각해보세요.

예시	
-	가해자가 카운터에서 카드를 내미는 모습을 기억했을 수 있지만, 그 카드가 나의 카드였을 수도 있습니다.
-	새벽 택시를 탄 기억이 있다면, 저녁과 새벽 두 번 택시를 탔는데 새벽엔 타인이 결제했을 수 있습니다.

- 따라서 객관적인 증거, 목격자들의 진술, 가해자의 진술 등으로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더라도 이를 맹신하여 **본인의 기억을 부정하지 말고 우선 증거를 통해 알게 된 사실은 기억하고 있는 사실과 별도로 정리**해두도록 합니다.

TIP. [어떤 증거를 봐서-어떤 사실을 알게 되었는지] 짝지어서 적어주세요.

예시	
-	신용카드 사용내역을 봐서 ▶ 내가 결제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	택시 결제 금액을 봐서 ▶ 저녁에 택시를 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음

다 피해로 인한 손해 정리

- 본인이 느끼기에 이 사건으로 인해 **본인과 본인의 주변이 이전에 비해 부정적으로 달라진 점**이 있다면 적어둡니다.

예시	
-	성폭력으로 인해 본인이 받은 정신적 충격(최대한 구체적으로 어떤 감정이 드는지)
-	그로 인해 생긴 일상생활의 불편함(공공장소를 가기 두렵다, 또래 남성과 둘이 만나기 싫다, 가족간 애정표현도 기분 나빠졌다, 가해자가 학교 동기라 학교에 나가기 싫어졌다 등)
-	병원 치료 또는 심리상담 여부
-	실제로 입은 금전적 손해
-	가해자가 낸 소문으로 인한 명예훼손
-	가해자의 행동으로 가족/친구 등 주변인이 두려움이나 불안감을 느낌
-	이사, 실업, 인간관계 단절 등

가

피해사실 정리 - 본인이 기억하는 것

1 가해자와 나의 관계

가해자와 나는 2020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귀 사이.

2 그날 만나게 된 경위

2024년 3월에 헤어지고 한동안 연락이 없었는데 2024년 6월 7일 밤 9시 40분에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잘 지내냐고 연락이 왔음. 다음날 영화를 보자고 해서 6월 8일 저녁 6시에 신촌 역 7번 출구 앞에서 만나기로 함.

3 범행 직전 1시간 정도

신촌 아르레온에서 영화를 보고 8시반쯤 나옴. 맥주를 한 잔 마시자고 하길래 근처 봉구비 어에 갔고 맥주 3000cc, 소주 2병을 같이 나눠마심. 중간부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다가 함. 울기도 했음. 4만원쯤 나왔는데 가해자가 계산을 했고 카카오택시를 불러서 가해자의 자취방으로 가기로 함. 택시를 탄 게 12시는 넘지 않았던 것 같음.

4 범행 자체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안쪽에 앉은 가해자가 본인 무릎에 나를 눕히고 오른쪽 어깨를 두 세번 쓰다듬음. 그날 흰 셔츠를 입고 있었는데 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어 속옷 위로도 가슴을 주무름. 택시를 10분 정도 탔는데 거의 5분은 그런 것 같음. 술에 취한 상태라 거부하지 못 함. 택시 안이 어두워서 기사님은 모르셨을 것 같음. 택시에서 내렸더니 종로2가역 근처였는데 내 허리를 감고 부족해서 걸어가려고 하길래 그냥 집에 가겠다고 하고 바로 택시를 잡아탔.

5 범행 이후 하루 이내

친구 000이 어떻게 되었냐고 카톡이 와서 택시에서 최악이라고 답변한 거 말고 잘 기억이 안 남. 집에 12시 조금 넘어서 왔고 그대로 화장도 지우지 못하고 잤음. 다음날 아침에 일어났더니 가해자로부터 새벽 2시 10분에 잘 들어갔냐고 카톡이 와있었음. 나한테 그거 밖에 할 말이 없냐고 8시 40분에 카톡을 보냈더니 읽고 답장이 없었음. 왜 최악이냐고 물어보는 친구한테 전화해서 택시에서 있었던 일을 얘기함.

6 현재

가해자로부터는 여전히 전화나 카톡 없음. 친구 000과 친구 000에게 다음날 얘기하고 계속 위로받고 있음. 친구 000가 내 핸드폰으로 대신 가해자한테 전화를 걸었는데 차단했는지 신호가 가지 않음.

나

피해사실 정리 - 나중에 알게 된 것

1 카드내역을 보니 봉구비어에서 밤 11시 20분에 43000원이 내 카드로 결제되었음.

2 다리가 아파서 보니 무릎에 멍이 들어있었음. 그날 넘어진 기억은 없는데 택시 타러 가는 길에 부딪치거나 넘어진 것 같음.

3 가해자의 집으로 간 택시 기록은 없고 집으로 온 택시 기록은 카카오택시 어플을 보니 12시 25분 탑승 12시 45분 도착임.

4 카카오톡을 보니 친구에게 최악이라고 답변한 건 12시 33분임.

5 봉구비어 사장님한테 2024. 6. 9. 오후 5시에 전화로 그날 기억나냐고 물어봤더니 마감 때까지 있었던 커플로 기억하심. 여자 분이 많이 취해서 화장실을 못 찾았다고 말하심. (녹음함)

6 봉구비어 사장님한테 CCTV가 있는지 볼 수 있는지 물어봤는데, 사장님이 보고 여자 분이 매장 외부에서 몸을 가누지 못해 남자 분이 허리를 안고 택시를 기다리고 있는 건 있다고 하였고 경찰이 오지 않으면 개인정보 문제 때문에 줄 순 없다고 하심. 보관기간이 2주라고 하셔서 경찰서 고소 예정이니 지워지지 않게 보관해달라고 부탁했고 7월 말까지 가지고 계시겠다고 함. (녹음함) 사장님이 상세영수증도 뽑아주심(맥주, 소주 병수 나온 영수증)

7 탔던 택시는 찾지 못했는데 오는 길에 탔던 택시는 카카오택시 통해 2024. 6. 10. 오후 2시에 전화했더니 종로에서 타서 합정까지 간 여자 분으로 기억하심. 술냄새가 많이 났는데 내가 나쁜놈이라며 평평 울어서 물티슈를 주셨다고 함. (녹음함)

다

피해로 인한 손해 정리

- 가해자랑 학교 선후배 사이인데 학교에서 불가봐 개네 단과대 근처는 못 감
- 무릎 까진 건 병원에 가서 치료 받음.
- 계속 그날이 생각나서 학교 심리상담 예약함.
- 학교를 휴학하고 싶음

3

고소장 작성하기



경찰서에 제출할 고소장을 작성합니다.

고소장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1

고소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본인의 개인정보를 드러내고 싶지 않을 경우 고소장에서부터 가명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가명 사용을 원한다면 처음부터 고소장에 성명을 쓰지 마시고 접수 시 경찰관에게 성폭력 피해자라 고소장부터 가명을 사용하고 싶다고 얘기하세요.

2

피고소인 이름, 주소, 생년월일, 연락처

- 정확히 모르더라도 가해자에 대해 아는 것들 위주로 작성하세요.
- 신원불명인 경우 피고소인의 성별, 연령대, 신체적 특징, 별명 등 알고 있는 것들을, 인터넷에서 만난 사람의 경우 상대방을 만난 인터넷 홈페이지, 상대방 ID, 닉네임, 상대방이 쓴 게시물 등 **수사에 활용할 수 있는 단서를 최대한 상세히** 적습니다.

예시

- '피고소인 성명불상자' 또는 '피고소인 성명불상자(별명 000)',
- '피고소인 성명불상자(000 커뮤니티 아이디 XXXX)'

3

고소취지

- **(i) 누구를, (ii) 어떤 죄로 고소하는지(죄명), (iii) 처벌의사가 있는지**를 적습니다. 보통 '피고인 000을 00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처벌하여 주십시오' 와 같이 짧게 한 문장으로 작성합니다.
- 죄명을 모른다면 첨부한 표 **별첨 2** 를 활용해보세요. 표를 보고도 잘 모르겠으면 죄명을 적지 않고도 접수할 수 있습니다.

4

범죄사실

- 범죄 행위 자체에 대해서만 범죄당 2~3줄 이내로 작성합니다. 일시, 장소, 범행방법, 결과 등을 포함합니다.

5

고소이유

- '2. 사건 정리하기'의 내용을 참고하여 작성하세요.
- 정해진 목차가 있는 것은 아니나 **'당사자들의 관계-사건의 개요-수사요망사항(CCTV 확보, 휴대폰 압수, 참고인 *** 조사, 증거자료 및 첨부서류 열람복사 제한 요청 등)-결론'**의 순으로 적는 것을 추천합니다.

6

증거자료 및 첨부서류

- 확보한 증거자료를 고소장 본문에 등장하는 순서대로 나열하세요('4. 자료 첨부하기' **18p** 파트 참고하여 증거자료 준비).

7

제출기관

- 고소장을 접수할 경찰서를 적으면 됩니다. 고소장은 (i) 범죄가 일어난 장소, (ii) 가해자는 곳 경찰서에 제출하는 것이 원칙이나, 실무상 피해자 근처 경찰서로 접수해도 피해자 조사가 끝나고 가해자 주소지의 경찰서로 이송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건 '1. 고소장 접수하기' **24p** 파트를 참고하세요.

TIP.

가해자의 고소장 열람복사에 대비하기

가해자가 고소장을 열람복사 신청해서 피해자의 고소장을 자세히 읽어보고 수사를 대비하기도 합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피해자는 고소장에 '가해자가 열람복사를 신청하면 범죄사실 부분만 복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본인의 고소장이 가해자에게 열람복사 되지 않으려면 고소장 상단에 **'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범죄사실'(n쪽)에 한정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여 주시고, 그 외 고소 이유 등 나머지 부분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불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주세요. 가해자에게 불필요한 정보가 넘어가는 일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아래 고소장(예시) 상단 참고)

피고소인이 고소장에 대한 열람, 복사를 신청하는 경우 '범죄사실'(1쪽)에 한정하여 열람복사를 허용하여 주시고, 그 외 고소 이유 등 나머지 부분은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제1항에 따라 열람복사를 불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고 소 장(예시)

고소인 000 (0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마포구 OO-O번지 OO아파트 301호
전화번호 010-1234-1234, 이메일 goso123@naver.com

피고소인 000 (000000-00000000)

서울특별시 종로구 OO-O번지 OO빌라 (호수 모름)
전화번호 010-1234-1234, 이메일 pigoso123@naver.com

고소취지

피고소인 000을 준강제추행의 혐의로 고소하오니,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범죄사실

피고소인 000은 2024. 6. 8. 밤 11시에서 12시 사이 신촌에서 종로로 가는 택시 안에서 술에 취해 잠이 든 고소인 000의 어깨를 2~3회 쓰다듬고, 옷 안으로 손을 넣어 가슴을 5분동안 주물렀습니다.

고소이유

1. 당사자들의 관계 및 고소의 요지

피고소인 000와 고소인 000은 2020년 1월부터 2024년 3월까지 사귀다 헤어진 전 연인 관계입니다. 그런데 피고소인 000은 오랜만에 만난 전 연인 고소인 000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한 고소인 000을 본인의 집으로 데려가려고 했는데, 피고소인의 집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위와 같은 범죄를 저질러 고소하게 되었습니다.

2. 사건의 개요

피고소인 000과 고소인 000은 00대학교 **학번 동기로 만나 2020년 1월부터 연애를 하다가 2024년 3월에 헤어지고 한 동안 연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2024. 6. 7. 밤 9시 40분에 피고소인 000이 먼저 인스타그램 메시지로 잘 지나냐고 연락을 하였고, 대화를 주고받다가 다음날인 2024. 6. 8. 저녁에 영화를 보자고 해서 다음날 저녁 6시에 신촌역 7번 출구 앞에서 만나 함께 영화를 보게 되었습니다(증거자료 1. 참조).

영화관은 신촌 아트레온이었고 영화는 '0000'이었습니다. 영화를 보고 8시반쯤 나오니 출출하니 맥주를 한 잔 마시며 영화 얘기를 하자고 피고소인이 얘기하길래 근처 봉구비에 갔습니다. 피고소인이 술을 빨리 마시는 편이라 거기에 맞추다보니 결국 맥주 3000cc, 소주 2병을 들이 나눠 마시게 되었고(증거자료 2. 참조) 중간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습니다. 술에 취해 잠이 들었다가 깨다가 하여 대화를 이어나갔고 중간에 헤어졌을 당시의 얘기를 하다가 울기도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봉구비의 마감시간이 다가와 밤 11시 20분쯤 제 카드로 피고소인 000이 42,000원을 결제하였고(증거자료 3. 참조) 피고소인 000이 카카오택시를 불러서 피고소인의 자취방 쪽으로 이동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택시를 타고 가는 동안 택시 안쪽에 앉은 피고소인이 술에 취해 몸을 가누지 못하는 고소인을 본인 무릎

에 눕힌 후 얇은 흰색 셔츠를 입고 있던 고소인의 오른쪽 어깨를 두세번 쓰다듬었습니다. 그리고 피고소인은 고소인의 셔츠 안쪽으로 손을 넣어 브라지어 바로 위로도 고소인의 가슴을 약 5분 가량 주물렀습니다. 고소인은 몸을 가누지 못해 넘어져 무릎에 상처가 날 정도로 술에 취한 상태라(증거자료 4. 참조) 거부하지 못했고, 택시 안이 어두워 기사님도 보지 못하셨을 것 같습니다. 피고소인과 고소인은 종로가역 근처에서 내렸고 내린 이후에도 피고소인이 아무렇지 않게 고소인의 허리를 감고 딱 달라붙어 걸어가려고 하길래 불쾌한 마음이 든 고소인은 집에 가겠다고 하고 02시 25분경 바로 택시를 잡아 탔습니다(증거자료 5. 참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보니 피고소인으로부터 02시 10분에 카카오톡으로 '잘 들어갔어? ㅋㅋㅋ'이란 카톡이 와있었고, 고소인은 08시 40분에 '너 나한테 그거밖에 할 말이 없냐?..'고 메시지를 보냈습니다(증거자료 6. 참조). 그러나 피고소인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읽고도 답변하지 않았고 이후 확인해보니 고소인이 카카오톡으로 항의하자 곧바로 고소인의 전화번호를 차단한 것 같습니다.

3. 수사요망사항 - 신속한 CCTV 확보의 필요성

피고소인은 고소인이 술에 많이 취하지 않았고 합의하에 한 신체접촉이라고 주장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봉구비어 사장 000(010-0000-0000)이 확인해본 결과 당일 가게 외부 CCTV에 많이 취해 제대로 서지도 못하는 고소인의 모습과 고소인이 술에 취한 것을 계기로 부족하다는 핑계로 불필요한 신체접촉을 하는 피고소인의 모습이 찍혀있다고 합니다. 고소인이 000에게 CCTV 영상을 보관해달라고 간곡히 부탁드려두었으니 2024. 7. 15. 까지 꼭 봉구비어의 가게 외부 CCTV 영상을 확보하여주시기 바랍니다.

4. 결론

사건 이후 고소인은 전연인이자 좋은 친구였던 피고소인의 위와 같은 범죄행위로 불연증과 우울증을 앓고 있고 혹시 피고소인을 만날까봐 학교에도 잘 나가지 못해 상담도 예약한 상황입니다(증거자료 7. 참조). 그런데 피고소인은 고소인에게 사과하고 반성하기는커녕 연락조차 받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사건 다음날 곧바로 피해사실을 알렸던 친구 000의 진술서(증거자료 8.)와 사건 직후 집에 돌아오는 길 탔던 택시의 기사님의 통화내용 녹취록(증거자료 9.)을 첨부하오니 꼭 철저히 조사해서 피고소인을 엄벌에 처해주시기 바랍니다.

증거자료

- 피고소인과의 인스타그램 DM
- 봉구비어 상세영수증
- 신한카드 이용내역
- 진단서 및 상처 사진
- 카카오택시 어플 택시 이용내역
- 피고소인과의 카카오톡 메신저 대화내역
- 학교 상담센터 예약내역
- 친구 000의 진술서
- 택시기사 000과의 통화 녹취록

첨부서류

위 증거자료 각 1부

2024. 6. 30.
위 고소인 000 (인)

서울OO경찰서 귀중

4 자료 첨부하기



아래 목록은 피해자 분들이 참고하실 수 있도록 여러 가능한 증거자료들을 나열해둔 **예시일** 뿐입니다. 증거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어도 고소할 수 있고 범죄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성폭력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증거는 피해자의 일관되고 구체적인 진술이란 점을 기억하세요!**

증거자료	참고사항	발급기관
상담 사실 확인서	- 언제 어떤 내용으로 상담 받았는지 등 필요한 내용이 들어가 있는지 확인하고 제출할 것	성폭력 상담소, 여성긴급 전화1366
진단서, 소견서	- 병원은 사건 발생 직후 에 갈 것 - 의사에게 성폭력에 의한 것이었다고 말할 것 *일반 진단서, 상해 진단서 모두 가능	병원
증거 사진	- 성폭력 전후 신체에 상처가 났다면 여러 각도에서 사진을 촬영 해 둘 것	-
(피해 당시 사건을 목격한 사람이 작성한) 목격자 확인서/진술서	- 목격자가 존재하는 경우, 목격자가 자신이 목격한 것에 대해 작성한 사실확인서나 진술서 를 받을 것 - 문서 형태로 받을 수 없다면, 목격자와의 대화내역이 담긴 메신저/문자메시지 캡처 도 제출 가능	-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알린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	- 사건이 발생한 이후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알린 사람이 작성한 진술서 - 문서 형태로 받을 수 없다면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알리는 대화내역이 담긴 메신저/문자메시지 캡처 및 통화내역 녹취록 도 제출 가능	-

증거자료	참고사항	발급기관
(가해자 또는 피해자가 사건에 대해 작성한) 문서(편지, 진정서, 각서 등)	- 가해자가 사건 이후 쓴 편지, 가해자의 행위에 대해 항의하기 위해 작성해 직장 등에 제출한 진정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겠다며 가해자가 작성한 각서 등 각종 사건과 관련되어 작성된 문서	-
메일, 문자메시지, SNS 관련 내용 캡처	- 가해자, 가족, 친구, 직장 동료, 선생님, 상담센터 등에게 사건과 관련해 문의하거나 이를 언급한 메일, 문자메시지, 또는 본인의 SNS 게시물 등	-
CCTV 영상자료	- 사건 전후 또는 사건 당시의 상황이 찍힌 CCTV 영상자료 *개인정보보호법 때문에 당사자에게 바로 주지 않는 경우가 많음. '경찰 신고 예정이니 보존해달라' 고 요청할 것	-
다른 피해자의 진술서	- 본인 외에도 같은 경위로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가 있는 경우, 해당 피해자의 진술서 - 문서 형태로 받을 수 없다면, 다른 피해자의 성폭력 피해 사실에 대한 내용이 담긴 메신저/문자메시지 캡처 및 통화내역 녹취록 도 제출 가능	-
휴대폰 통화기록	- 사건 전후 피해자가 가해자 등과 통화한 내역	-
(피해자 본인이 작성한) 일기, SNS, 메일 등	- 날짜와 시간이 드러나 있는 사건에 대해 언급한 피해자 작성 문서 * 오랜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범죄이거나 사건으로부터 상당한 시간이 흘러 고소하는 경우 특히 도움이 됨	-
그 밖에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	-	-

* 증거자료를 제출할 때 가급적 **원본을 제출**하세요. 피해자가 임의로 편집해 제출하는 경우 자료의 신빙성에 의심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조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밑줄이나 형광펜을 쳐서 제출하고 자료는 가급적 임의로 편집하지 마세요.

* 자료를 제출할 때 꼭 **사본을 만들어서 보관**하세요.

5 그 외 Tip



1 고소장에 들어가는 개인정보를 보호하자 (가명조서 활용 등)

* 성폭력처벌법 제23조, 범죄신고자법 제7조 참조

- 고소장부터 가명을 사용하고 주민등록번호를 별표(*) 처리하는 인적사항 기재 생략이 가능합니다('3. 고소장 작성하기 14p' 중 피해자 인적사항과 관련된 부분 참고).
- 본인 주소가 드러나는 게 싫을 경우 변호사 사무실이나 성폭력상담소 등 제3의 장소를 [서류 송달을 위한 주소지]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가해자의 열람복사에 대비하자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9조 및 경찰 수사서류 열람·복사에 관한 규칙 제4조 참조

- (i) 범죄사실과 (ii) 고소이유를 분리하여 작성하여, (i) 범죄사실에서는 혐의사실 위주로 간략히 기재하고 (ii) 고소이유에서는 혐의사실과 증거관계를 상세히 설명한 후, 피고소인의 열람복사 신청시 (i) 범죄사실 부분만 복사해달라고 요청할 수 있습니다('Tip. 가해자의 고소장 열람복사에 대비하기 15p' 참고).
- (i) 범죄사실만 복사해달라는 피해자 측 요청이 받아들여질지 불확실한 경우 **고소장에 는 고소취지와 범죄사실만 적어서 접수**하고 (ii) 자세한 고소이유(증거관계 및 기타 제반 상황)는 피해자 진술서 또는 의견서 등으로 별도로 제출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3 고소 전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이용하자

* 성폭력처벌법 제23조, 범죄신고자법 제13조 및 제13조의2 참조

- 보복이나 재피해 등 추가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피해자**의 경우 경찰서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 전이라도 가능하니 가까운 경찰서에서 범죄피해자 안전조치 기능을 안내받아 신청하도록 합니다.

- 상황에 따라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맞춤형 순찰, 위치추적 및 SOS 기능 탑재된 스마트워치 지급, 주거지 등에 CCTV 설치, 가해자 경고 등 다양한 조치들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4 성폭력상담소 등 성폭력 피해자를 돕는 기관의 도움을 받자

* 검사의 국선변호사 선정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

- 각 지역의 성폭력 상담소들은 성폭력범죄 피해자들을 오랜 기간 지원해온 전문성을 갖춘 기관으로, 의료/상담/쉼터 등 다양한 영역에서 피해자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 카카오톡, 익명 채팅, 이메일, 전화, 대면 등 피해자가 원하는 방식으로 기관과 소통할 수 있고 다양한 지원(의료비 지원, 무료 상담, 미술치료 등)도 받을 수 있으니 가까운 곳에 성폭력 상담소가 있는지 확인해보고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문의해보는 게 좋습니다.

* 여성가족부_가까운 시설찾기 https://www.mogef.go.kr/inc/fs_fsc_s003.do?mid=fsc3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_지원기관 현황 <https://www.stop.or.kr/home/kor/M522235698/support/network/index.do?>

- 특히 성폭력 상담소, 성폭력피해자보호시설, 성폭력피해자통합지원센터의 경우 위 규칙 제11조에 따라 검사에게 협조를 요청하여 **고소장 작성 단계부터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도록 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 부분은 실무상 자주 사용되고 있진 않으므로 일선 성폭력 상담소 또는 검찰청에서 해당 제도를 잘 모르고 있기도 합니다. 이 경우 위 규칙 제11조를 근거로 들어 재차 지원을 요청해볼 수 있습니다.

5 관련 양식은 간편하게 다운받자

- 피해자가 고소장을 포함해 여러 수사기관, 법원 등에 제출해야 하는 서류를 작성하려고 할 때 어떤 것들이 들어가야 하는지 잘 알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이런 경우를 대비해 각종 국가기관들에서 여러 양식을 예시로 올려두고 있으니 이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고소장의 경우 [경찰 민원포털_수사 탭_고소장 양식]이 나홀로소송을 할 때 자주 사용되고 있습니다.

- 경찰 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customerCenter/fileDown>
- 대검찰청 민원서식 내려받기 <https://www.spo.go.kr/site/spo/ex/board/List.do?cbldx=1101>
- 대한민국 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https://help.scourt.go.kr/nm/minwon/doc/DocListAction.work>
- 대한민국 법원 나홀로소송 <https://pro-se.scourt.go.kr/wsh/wshA00/WSHA10.jsp>
- 대한법률구조공단 <https://www.klac.or.kr/legalinfo/legalFrm.do>



가

고소장 접수처

* 형사소송법 제4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 참조

- 고소장은 ①피고소인(가해자)의 등본상 주소지, ②범죄지(범죄가 일어났던 곳) 또는 ③현재지(가해자가 현재 실제로 사는 곳)를 관할하는 경찰서 제출이 원칙입니다.
- 그러나 실무상 ③피해자 근처 경찰서 아무 곳이나 넣어도 고소인(피해자) 조사 후 이송되므로 고소장 접수 자체는 가까운 경찰서에도 하실 수 있습니다.
- 다만 ④의 경우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하지 않은 곳에서 피고소인(가해자) 조사를 하게 되므로 수사기관의 사건에 대한 이해도가 낮을 수 있다는 점, 지속적으로 소통해온 수사관이 바뀌게 된다는 점, 이송 등으로 사건 처리가 지연될 수 있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나

대리인 및 우편/인터넷 접수

* 형사소송법 제236조, 경찰수사규칙 제23조 참조

- 경찰서에 직접 고소하기 어려운 상황인 경우, 대리인을 통해 고소할 수 있습니다.
- 변호사뿐 아니라 친구, 가족, 지인 등 일반인이라도 피해자의 고소대리인이 될 수 있습니다.
- 고소장을 대리인을 통해 접수하기 위해서는 실무상 위임장 및 피해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이 필요합니다.
- 그 외에도 등기우편으로 해당 경찰서에 고소장을 보내거나, 전자문서 시스템을 사용하는 경찰서에 문서24(<https://docu.gdoc.go.kr/>)를 사용해 인터넷으로 고소장을 접수할 수도 있습니다.

다

피해자 국선변호사 신청

* 성폭력처벌법 제27조 제6항, 검사의국선변호사선정등에관한규칙 참조

- 성폭력 피해자는 무료로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이 피해를 입은 범죄가 피해자 국선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는 범죄인지 판단이 되지 않는 경우 성폭력처벌법 제2조(정의)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실무상 피해자 조사가 이뤄진 이후엔 피해자 국선변호사가 수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적습니다. 따라서 **가급적 고소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관에게 피해자 국선변호사를 선정해달라고 요청하시고 피해자 조사도 피해자 국선변호사와 함께 받고 싶다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Q

저는 신고를 했는데 따로 고소장을 제출해야 하나요?

- 경찰은 사건을 크게 고소/고발사건과 인지사건으로 구분하는데, 신고를 했더라도 실제로 고소장을 제출하지 않은 경우 실무상 대부분 인지사건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고소인으로 인정받지 못하는데,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고소를 한 피해자에 비해 보장되는 권리가 적습니다. 특히 고소를 해야만 추후 검찰 단계에서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렸을 때 항고를 통해 다뤄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상대방이 부인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꼭 고소장을 제출해 고소인의 지위에서 사건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Q

이미 인지사건으로 처리되고 있다고 해요.

- 이 경우 **고소장을 추가로 접수**하면 됩니다. 실무상 이미 수사 중이므로 받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가 있으나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50조에 따르면 경찰관은 임의로 고소장을 반려할 수 없으며 동 규칙 제50조의2에 따라 각하 결정을 할 수 있을 뿐입니다. 고소장 접수 여부에 따라 피해자에게 보장되는 권리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고소장을 접수하고 인지사건이 아닌 고소사건으로 진행해달라**고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Q

고소장을 받아주지 않았어요.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6조의2, 경찰수사규칙 제21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49조 참조

- 위 참조 조문을 보면 경찰관은 고소·고발이 있는 때에는 원칙적으로 이를 수리하여 즉시 수사에 착수하여야 합니다. 다만 아주 예외적으로 법에 정한 사유가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서 고소장을 진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 그럼에도 ‘이건 범죄가 되지 않는다’, ‘잡지 못한다’, ‘증거가 충분하지 않다’ 등의 핑계를 대며 고소장을 접수하지 않는 사례가 종종 발견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조문들을 들**

어 고소장 접수를 재차 요구하시거나, 경찰서 청문감사실 또는 국민신문고를 통해 민원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해당 경찰서 외 고소장을 받아주는 다른 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하거나, 직접 경찰서에 가지 않고 등기우편으로 고소장을 발송하여 현장 거부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고소장을 제출하는 등의 대안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2 고소인(피해자) 조사받기



피해자 조사는 [날짜 잡기 - 출석하기 - 조사받기 - 조서 확인하기 - 열람복사하기]의 순으로 이루어집니다.

조사 전

- 1 수사관이 고소인 조사 날짜를 잡으려고 할 때 본인이 선호하는 날짜를 적극적으로 말하세요. 특히 피해자 국선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경우, 고소인 조사 전에 국선변호사와 시간을 맞춰 사건에 대해 간단히 논의하고 조사 동석을 요청하도록 합니다.
- 2 고소장과 준비한 서류들, 이미 제출한 서류들을 다시 읽어보세요. 시간이 지나 기억을 못 하는 것들이 생길 수 있으니 조사 전 고소장과 제출한 자료들에 어떤 내용이 들어있는지 꼼꼼히 확인하여 전반적인 기억을 되살린 상태에서 조사에 임하는 게 좋습니다.
- 3 조사에서 수사관에게 꼭 말하고 싶은 것들이 있다면 핵심 단어 위주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보세요. 조사에 들어가면 꼭 조서에 남기고 싶은 내용인데도 수사관이 물어보지 않아서 대답하지 못하거나 말하는 걸 잊어버릴 수 있습니다. 그럴 때를 대비해 내가 말하고 싶은 것들이 무엇인지 단어 중심으로 체크리스트를 미리 작성해 가져가면 중요한 부

분을 누락하지 않고 진술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 4 새로운 증거자료가 있다면 미리 프린트하거나 USB에 담아 준비해 가도록 합니다. 현장에서 수사관이 바로 확인하기 쉽도록 이왕이면 프린트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조사에서 그 서류를 제출하며 어떤 취지의 증거자료인지 설명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

- 1 기억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세요.
 - 수사관의 일부 질문은 나로 하여금 창피하거나 불편한 마음이 들게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수사관은 피해자의 편도 가해자의 편도 아닌 중립적인 입장에서 사건의 진상을 파악하는 사람일 뿐입니다.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불리한 내용이라 하더라도 솔직하게 말하고, 나에게 유리하게 느껴지는 내용이더라도 부풀리지 마세요. 추후 반대되는 증거가 나오면 매우 불리할 수 있고, 수사기관에서 불리한 내용을 솔직하게 말했다는 자체가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판단하는 유리한 사실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 불리한지 유리한지 선부르게 판단하지 마시고, 솔직하게 기억이 나는 대로 진술하세요.
 - 자연스럽게 진술하세요. 모든 사람의 기억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시간이 흐름에 따라 기억이 더 나거나 덜 나는 것이 당연하고, 수사관 역시 이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고소장이나 증거자료를 외워서 준비해가는 것은 오히려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을 의심하게 되는 계기가 되기도 합니다. 조사 전 고소장 등을 확인해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기억을 환기하되 고소장 등을 똑같이 말해야 한다는 강박에서 벗어나 기억나는 대로 자연스럽게 진술하세요.
- 2 감정, 판단, 개념어 대신 정확한 단어로 경험한 것을 진술하세요
 - 애매한 개념어를 사용해 설명하는 것은 사건을 더 혼란스럽게 합니다. 나의 감정이나 판단을 말하는 것도 내가 경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에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나를 이 사건의 목격자라고 생각하고 그날 사건에 대해 경험한 구체적인 말과 행동을 정확하게 진술하세요.

- 예를 들어 ‘가스라이팅을 당했다’고 말하는 것은 나의 판단에 해당합니다. 그렇게 말하지 말고 [(내가 가스라이팅 당했다고 생각하게 된) 상대방의 말과 행동이 무엇인지]에 대해 말하는 게 좋습니다. ‘맞았다’고 간단히 축약하는 대신 [그 사람이 무엇을 이용해 나의 어느 신체를 몇 회/몇 분 가량 때렸는지] 설명하는 게 더 상황을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결국 조사에서 진술할 땐 나의 감정이나 판단에 대한 얘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행위에 대해 내가 보고, 듣고, 경험한 것들에 대해 얘기**해야 합니다.

3 수사관을 적대하지 마세요.

- 수사관은 자신의 일인 수사를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내 편도 가해자의 편도 아니에요. 최종 판결을 내리는 사람도 아닙니다. **따라서 수사관의 태도에 화가 나거나 내 편을 들어주지 않는 것 같아 서운하더라도 현장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침착하게 대답하는 걸 우선으로 생각하세요.** 더 이상 진술을 평소처럼 하기 어렵다고 느껴진다면 **잠시 휴식을 요청**하거나 **수사를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 다만 수사관이 2차 가해를 하는 등(예시: 가해자를 적극 옹호함, 피해자에게 범죄의 책임을 돌림 등) 수사관으로부터 인권침해에 준하는 부적절한 피해를 입은 경우엔 **청문감사실에 민원을 제기**하거나 수사관 기피신청(‘Q. 수사관을 변경하고 싶어요 30p’ 참조)을 통해 수사관을 교체할 수 있습니다.

4 메모를 활용하세요

- 조사를 받는 동안 메모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진술하다가 본인이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진술이 있는데 수사관이 제지하며 그건 나중에 물어보겠다고 하거나 다른 질문으로 넘어가는 경우 조사가 마무리될 즈음 다시 질문해달라고 요청하거나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을 하라고 할 때 언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5 꼼꼼하게 진술조서를 확인하세요.

- 조사가 끝나면 수사관이 진술조서에 진술한대로 적혀있는지 확인할 것을 요청하며 그날 조사 내용을 정리해둔 서류(=진술조서)를 보여줍니다. 수사를 마치고 지친 상태겠지만, **이때 꼭 꼼꼼하게 진술조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한 말이 빠지진 않았는지, 긴장해서 사실과 다르게 말해 지금이라도 고치고 싶은 부분이 있는지 등을 필히 확인합니다.

- **이 단계 이후에는 진술조서를 수정할 수 없습니다. 진술의 일관성은 피해자의 가장 큰 무기인만큼 힘들더라도 충분한 시간을 들여 꼼꼼히 읽고 덧붙이거나 수정할 부분을 체크한 후 수사관에게 진술을 수정하고 싶다고 요청해야 합니다.** 일부 수사관은 ‘진술한대로 적혀있다.’며 해당 요청을 받아주지 않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본인이 생각하기에 중요한

부분이라면 ‘진술한대로 적혀 있지 않은 조서이므로 서명할 수 없다’고 주장하며 강경히 대응해볼 수 있습니다. **다른 증거가 많지 않은 성폭력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은 매우 중요한 증거**이므로 힘들더라도 꼼꼼히 확인하시고 수정이 필요한 경우 꼭 수정하시기 바랍니다.

* 참고: 수사관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신뢰관계인이 동석한 경우, 진술조서를 확인할 때 신뢰관계인과 함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혼자서 조서를 확인하는 일이 어려우시다면 꼭 신뢰관계인의 도움을 받아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6 수사관과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을 확인하세요.

- 조사 전후 수사관의 이름과 직급, 내선번호, 이메일 등을 확인하여 소통 창구를 마련해 두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추가 자료가 있을 때 제출하거나, 가명을 사용한 피해자의 경우 수사 진척 상황을 물을 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TIP. 조사에서 피해자가 사용할 수 있는 제도

1 영상녹화 또는 진술녹음 사용

- 피해자는 변호인이나 신뢰관계인 없이 혼자 수사를 받는 경우 영상녹화 또는 진술녹음 중 하나를 선택해 조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수사관에 의한 인권침해 및 2차가해를 방지**하고, **진술조서와 실제 진술에 차이가 있는 경우를 대비하여 증거자료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원하는 경우 조사에 앞서 수사관에게 요청하면 됩니다.

- 다만 영상녹화 또는 진술녹음을 하는 경우 추후 본인이 영상이나 녹음을 확인하는 데 제약이 따를 수도 있고, 가해자도 이 자료에 대해 열람복사를 신청할 수 있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피해자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점을 유의해야 합니다. **혼자 조사를 받는 경우 가급적 영상녹화 또는 진술녹음을 권합니다만 피해자의 상황에 따라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2 신뢰관계인 동석

* 성폭력처벌법 제34조, 경찰수사규칙 제38조,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및 제163조의2, 형사소송규칙 제84조의3

- 피해자 조사시 <피해자의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가족, 동거인, 고용주, 변호사, 그

밖에 피해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조사에 동석할 수 있습니다.

- 동석한 신뢰관계인은 피해자 대신 진술을 하거나 수사에 대해 의견을 낼 수는 없지만, 심리적으로 위축되어 있는 피해자의 옆에 착석하여 피해자가 차분하게 진술할 수 있도록 심리적 안정을 주고, 수사관과 피해자가 나눈 대화를 메모하거나 추후 진술조서를 함께 살펴보는 방법으로 피해자를 조력할 수 있습니다.

3 가명조서 작성

*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자신고자등보호법 제7조, 제9조, 제11조,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176조

- 성폭력범죄의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수사를 받을 때 이름, 나이, 주소, 연락처 등 본인의 인적사항을 전부 또는 일부 기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다만 수사기관에서 가명을 사용할 경우 형사사법포털을 통해 수사상황을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후 일부 통지가 누락되거나 수사상황을 알기 위해 직접 수사기관과 소통해야 한다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의 상황에 맞춰 적절히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Q 수사관을 변경하고 싶어요.

- 피해자는 (경찰청) 범죄수사규칙 제9조에서 제11조에 따라 **경찰관이 불공정한 수사를 하였거나 그러한 염려가 있다고 불만한 상황**이 있다면 경찰관에 대해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수사에 대해 불공정한 수사관을 교체하고 싶다면 (i) 경찰민원포털을 통해 온라인으로 기피신청을하거나 (ii) 오프라인으로 기피신청서를 작성해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서에 제출하면 됩니다.

Q 제가 진술한 내용과 제출한 서류를 다시 확인하고 싶어요.

- 피해자는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본인의 진술조서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들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실무상 경찰단계의 진술조서 복사 및 제출서류 복사는 정보공개청구 사이트(www.open.go.kr)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본인의 사건이 진행되고 있는 경찰서에 어떤 서류들을 받고 싶은지, 본인이 누구인지 밝혀 신청하면 되고 공개 여부 결정은 청구한 날로부터 보통 10일, 최대 20일 내에 이루어집니다.

- 피해자 조사에서 만들어진 피해자 본인의 진술이 담긴 진술조서의 경우 정보공개청구를 통하지 않고 경찰수사규칙 제87조 제3항에 따라 조사 당일 복사해올 수도 있습니다. 다만 성폭력 사건의 경우 사생활 보호 등 여러 이유로 당일 조서 복사가 불허될 가능성도 있고 실무상 자주 사용되는 방법이 아니라서 수사관이 거부할 수도 있습니다. 이 경우 위 정보공개청구를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Q 귀찮은데 꼭 진술조서 및 제출서류에 대한 열람복사를 해야하나요?

- 시간이 지남에 따라 본인이 고소장에 작성한 내용, 경찰서에서 진술한 내용 등이 기억이 나지 않거나 제출한 서류가 원본이라 피해자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 등이 발생합니다. 그러나 이후 단계에서도 상황에 따라 다시 진술을 해야 할 수 있고 이때 진술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증거가 없는 성폭력 사건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따라서 이후의 상황에 대비하여 **본인이 진술한 내용 및 제출한 서류들을 가능한 즉시 확보**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3

추가수사 기다리기



피고소인(가해자) 조사 / 추가 조사 / 참고인조사

- 고소인(피해자) 조사를 마친 이후에는 수사기관의 가해자, 참고인 조사 등을 기다리게 됩니다.
- 추가로 진술하고 싶은 내용이 있거나 더 제출하고 싶은 자료가 있는 경우 수사관과 소통하여 진술서, 참고자료의 형식으로 적절히 제출하도록 합니다.
- 고소를 한 피해자의 경우 별다른 신청 없이도 형사사법포털(www.kics.go.kr 일명 '키스')과 모바일(앱)을 통해 온라인상으로 사건조회, 사건처분결과, 공판개시 등 형사절차 진행상황을 조회할 수 있고, 사건기록 열람·등사 신청, 진정서·탄원서 제출 및 증명서 발급 등 각종 민원서비스 역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서면으로 범죄피해자 정보제공 동의를 해야 위 형사사법포털과 모바일(앱)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조사 시 확인한 내선번호 및 이메일 등을 통해 담당 수사관에게 직접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다만 수사단계에서 가명을 사용한 경우 키스를 활용할 수 없고 오프라인 통지 역시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가명을 사용하였다면 수사관과 직접 소통하며 사건 진행 상황을 꾸준히 확인할 것을 권장합니다.

Q 가해자가 저에게 추가로 범죄를 저지를 것 같아 두려워요.

* 성폭력처벌법 제23조, 특정범죄자신고자등보호법 제13조, 범죄피해자보호법 제9조, 경찰수사규칙 제80조 참조

- 피해자는 수사기관에 범죄피해자 안전조치를 신청할 수 있고, 피해자의 상황과 의사에 따라 [보호시설 연계, 임시숙소 제공, 신변경호, 맞춤형 순찰, 112시스템등록, 스마트워치지급, CCTV설치, 가해자 경고 제도] 중 일부가 중복하여 조치될 수 있습니다. 각 경찰서의 사건 담당 수사관이나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해보시면 됩니다.

Q 가해자가 합의하자고 연락이 왔어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 합의란 실무상 **범죄 피해자가 일정 금액을 받고 가해자에 대해서 해당 범죄에 대해 더 이상 처벌을 원치 않는다고 수사기관 및 법원에 알리는 일**을 통칭합니다. 합의를 하거나 하지 않는 것은 각 피해자의 상황과 선택에 온전히 달려있습니다. 피해자가 빠르게 금전적 배상을 받고자 하는 경우 합의는 피해자에게 간편한 피해회복 수단이 되기도 하기에, **합의 자체는 피해자가 선택할 수 있는 여러 선택지 중 하나로** 보아야 합니다.
- 다만 합의는 가해자의 처벌에 큰 영향을 미치지 때문에 피해자가 합의를 원하지 않는 경우에도 가해자나 가해자의 지인들이 피해자에게 계속해서 연락해 합의를 강요하는 등 2차 피해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원치 않는 합의 연락이 지속되는 경우 꼭 피해자 변호사, 수사관, 검사, 판사 등에게 합의를 강요하는 2차 피해가 이뤄지고 있음을 알리도록 합니다. 피해자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고, 가해자의 처벌에도 중요한 참고자료가 됩니다.
- 또한 합의 의사가 있더라도 주변의 조력 없이 나홀로소송을 하는 피해자의 경우 **(i) 주변의 강압에 의해 원치 않는 합의를 하고 있는 건 아닌지, (ii) 합의 금액이 범죄로 입은 상처를 회복하기에 적절한 수준인지, (iii) 합의하면 가해자가 받을 처벌이 가벼워진다는 점을 받아들일 수 있는지** 등을 스스로 오래 고민한 후 신중하게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Q 사건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에게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경찰 - 경찰수사규칙 제11조

*검찰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제259조의2, (대검 예규)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대한 지침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알린 인적사항에 따라 각 문자와 우편으로 기소 여부 등 사건의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엔 피해자로서 각 수사기관에 통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통지가 오지 않는다면 경찰은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1577-2584)에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신청하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는지, 가해자의 재판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재판결과 및 가해자가 받은 형은 무엇인지, 가해자가 구속되었는지, (감옥에 갔다면) 언제 출소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피해자에게 통지됩니다.

TIP.

그 외 기타 피해자가 받을 수 있는 조사 유형

1 폴리그래프 검사 (일명 '거짓말 탐지기')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6조 참조

- 증거가 없는 사건인 경우 경찰 수사단계에서 수사관이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폴리그래

프 검사를 권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피해자 상대로는 검사를 하지 않는 추세이나 **피해자 본인이 자발적으로 원하거나 다른 증거가 없고 가해자가 격렬히 다투는 사안인 경우 검사가 실시됩니다.** 폴리그래프 검사를 받고자 하는 피해자는 수사관에게 검사 동의 여부를 말한 뒤, 폴리그래프 검사 일정을 잡고 개별 경찰서가 아닌 시도청 과학수사과에 출석하면 됩니다.

- 폴리그래프 검사 당일 대상자의 동의 여부 및 대상자가 검사에 적합한지(연령, 질병, 약물 복용 등) 여부를 확인합니다. 이 과정에서 대상자가 뒤늦게 마음을 바꿔 검사에 동의하지 않거나 정신과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등 검사에 적합하지 않으면 검사는 실시되지 않고, 대상자가 검사에 재차 동의하고 검사에 적합한 경우, 검사 전 면담을 한 뒤 검사 절차에 들어갑니다. 검사 전 면담까지는 수사관이나 변호사가 동석할 수 있지만 검사는 대상자 혼자 받습니다.
- 다만 우리 법원은 폴리그래프 검사 결과를 증거로 인정하고 있지 않아 수사과정에서 참고자료로만 사용되고 있습니다.

2

법치면

*** (경찰청) 과학수사 기본규칙 제37조**

- 피해자가 사건 당시 상황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 법치면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법치면은 자발적으로 진술하고자 하는 자를 대상으로 하므로 피의자는 대상이 되는 경우가 거의 없고, **대부분 피해자에 대해 오래된 사건이나 기억이 부정확한 상황을 기억해낼 목적으로 실시합니다.**
- 법치면에 대해 대상자가 의식을 잃거나 기억을 상실하는 것은 아닌지 피해자들이 오해하기도 하지만 **법치면은 대상자가 눈을 감고 이완된 상태에서 자유진술을 하는 과정**에 가깝습니다. 법치면 전과정은 녹화되고, 법치면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기록된 보고서가 작성됩니다. 폴리그래프 검사와 마찬가지로 시도청 과학수사과에서 실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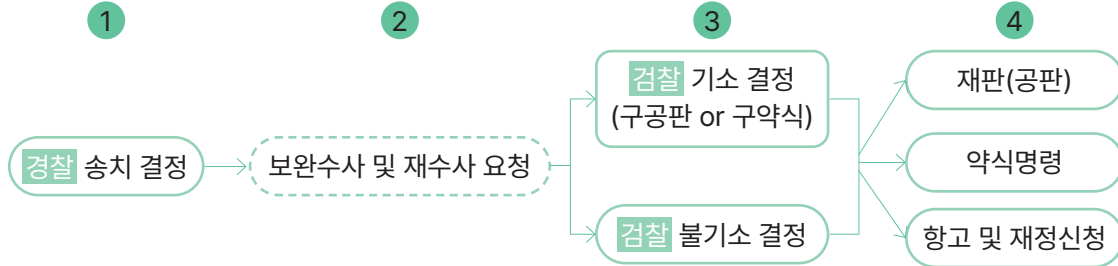
4 이의신청하기



- 경찰 단계에서 가해자에 대해 **불송치 결정(가해자를 처벌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려질 수 있습니다. 이때 피해자는 불송치 결정에 대해 **고소를 했든 하지 않았든** ‘가해자를 처벌하여 달라, 다시 수사를 해달라’라는 취지로 검사에게 판단을 구하는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이의신청을 위해서는 우선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불송치 결정서**를 발급받아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불송치 결정서에는 피해자의 주장, 가해자의 주장, 수사관의 판단 등이 모두 담겨있습니다. 특히 중요하게 살펴보아야 하는 점이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이유**입니다.
- **이의신청서에는 수사관의 불송치 결정 이유에 대해 반박하는 내용을** 담습니다. 이때 이를 뒷받침하는 **새로운 증거를 첨부**하는 것이 매우 도움이 됩니다. 증거 없이 반박하는 내용의 주장만 하는 경우 다른 결정이 내려지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 이의신청은 언제든지 할 수 있지만, 실무상 불송치 결정이 난 후 최대한 빠르게 **가급적 3개월 내**에 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왜냐하면 불송치 결정이 난 후 수사서류는 검사에게 우선 전달되는데, 검사가 약 3개월이 지나면 다시 경찰에 수사서류를 반환하기 때문입니다. **문제가 없음을 검사가 확인하여 경찰에 반환한 사건에 대해 이의신청을 해서 받아 들여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 **가급적 이의신청은 피해자 변호사, 성폭력상담소 등의 외부 도움을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미 수사관이 불송치 결정을 한 사건의 결론을 바꾸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의신청 결과 재차 **불기소 처분**이 내려진 경우 항고, 재정신청 등의 추가적인 이의신청 절차들을 밟게 되는데, 이 단계에서의 인용률은 더욱 낮습니다. 따라서 이의신청을 정확하고 확실하게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불송치 결정이 내려진 경우 먼저 불송치 결정서를 발급받아 살펴보고 이의신청서를 혼자 작성하기 어려울 것 같다면 즉시 외부의 도움을 요청하여 진행하는 것을 권합니다.

1 들어가기 전에

지금은 무슨 단계인가요?



- 경찰이 수사를 마치고 가해자가 범죄를 저지른 것 같다고 판단하면 검찰에게 사건(관련 서류, 증거물 등)을 보내는데, 이것을 **송치**라고 합니다(1. (경찰) 송치 결정).
- 검사는 송치된 기록을 보고 법원에 가해자를 심판해달라고 요청할지 말지를 결정합니다. 이때 검사가 법원에 심판을 요청하는 것을 **기소**라고 하는데, 검찰의 **기소 결정**에는 **재판(공판)을 구하는 구공판 결정**과 **약식명령을 구하는 구약식 결정**이 있습니다.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은 불기소 결정**이라고 하며 이에 대해서는 항고 및 재정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3. (검찰) 기소 결정, 3. (검찰) 불기소 결정).
- 검사는 기소나 불기소 결정을 하기 앞서 수사가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하면 경찰에 추가로 수사를 해달라고 돌려보내거나, 직접 수사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모든 사건에서 **보완수사나 재수사**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2. 보완수사 및 재수사요청).
- 피해자 입장에서 검찰 수사 단계는 직접 고소장을 작성하거나 경찰서에서 가서 조사받았던 이전 단계와 달리 **해야 하는 일이 상대적으로 적은 단계**이지만 생소한 단어들과 절차들이 많아서 헷갈리기 쉬운 단계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검찰 수사단계에서 사용되는 절차와 결정이 무엇인지 위주로 살펴 보겠습니다.

2 보완수사요구와 재수사요청



가 보완수사요구 - 경찰이 송치결정한 사건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

- 검사는 **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 즉 경찰이 가해자에게 범죄혐의가 인정된다고 본 사건에 대해 기소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이 때 수사 내용이 미진한 등 검사가 판단하기에 추가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추가로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검사가 경찰에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경우 사건은 다시 경찰로 돌려 보내지고 **검찰이 아닌 경찰에서** 추가 수사를 하게 됩니다. 다만 사안에 따라 검사가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검사가 직접 보완수사를 하기도 하지만 검경 수사권조정 이후 대부분의 보완수사는 경찰에서 이뤄집니다.
- 따라서 피해자는 보완수사가 이뤄지는 경우 **(i) 경찰과 검찰 중 어디에서 보완수사를 하는지 우선 파악하고, (ii) 보완수사가 내려지게 된 이유(검사가 수사가 부족했다고 판단한 이유)를 담당자와 소통하여 확인한 후, (iii) 그 부분에 대한 추가 자료나 증거를 제출할 수 있다면 제출해야 합니다.**

나 재수사요청 - 경찰이 불송치결정한 사건

*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64조 제2항

-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불송치결정이 위법 또는 부당한 때에는 경찰에게 1회에 한하여 재수사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물론 경찰은 재수사를 하고도 재차 불송치 결정을 내릴 수 있긴 합니다. 그러나 검사는 경찰의 재수사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송치의 위법 또는 부당이 시정되지 않았다고 판단한다면 검찰로의 사건송치를 요구할 수 있으므로 **피해자는 불송치결정된 사건에 대해 검사의 재수사요청이 있는 경우 경찰 수사관의 재수사를 잘 지켜보고 부족함이 있다면 담당 검사에게 이 부분을 의견서, 진술서, 탄원서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Q

검찰에서 피해자가 조사받을 때 사용할 수 있는 제도는 어떤 것이 있나요?

* 형사소송법 제221조 제3항, 제163조의2 제1항, 성폭력처벌법 제34조 제1항 및 제2항, 제27조 제6항

- 검찰에서 직접 수사를 하는 경우 피해자는 검찰에서 추가 조사를 받기도 합니다. 이때 피해자는 **경찰 수사단계와 동일하게**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과 함께 조사에 갈 수 있고, 피해자 국선변호사 선정을 요청하여 법률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다만 경찰과 달리 검찰에서 성폭력 피해자를 직접 수사하는 일은 상당히 예외적인 경우에 속한다는 점을 알아두어야 합니다.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의심받고 있을 수도 있고, 피의자에 대한 무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을 수도 있습니다. 검찰에서 직접 조사 받는 경우 가급적 전문가와 지원기관의 도움을 받길 권합니다.
- 그 외 조사에서 주의할 사항은 앞 ‘II. 수사단계 - 경찰, 조사 시 27p’을 참고하세요.

Q

사건 진행상황이나 결과에 대해 수사기관에게 통지를 받을 수 있나요?

* 경찰 - 경찰수사규칙 제11조

* 검찰 - 형사소송법 제258조, 제259조, 제259조의2, (대검 예규) 고소·고발사건 중간통지에 대한 지침

- 네, 받을 수 있습니다. 피해자가 수사기관에 알린 인적사항에 따라 각 문자와 우편으로 기소 여부 등 사건의 결과가 통지됩니다. 다만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통지가 누락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때엔 피해자로서 각 수사기관에 통지를 별도로 신청해야 합니다.
- 만약 **통지가 오지 않는다면 경찰은 담당 수사관에게, 검찰은 검찰청 피해자지원실 (1577-2584)에 통지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통지를 신청하면 수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검사가 가해자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였는지, 가해자의 재판이 언제 어디서 열리는지, 재판결과 및 가해자가 받은 형은 무엇인지, 가해자가 구속되었는지, (감옥에 갔다면) 언제 출소하는지 등에 대한 내용이 피해자에게 통지됩니다.

3

기소 결정(구공판, 구약식)과 불기소 결정



가

기소 결정(구공판, 구약식)

- 검사가 가해자의 범죄혐의를 인정하는 경우 가해자에 대해 **법원의 판단을 구하기 위해 공소를 제기(=기소)**하는데, 이때 검사는 범죄에 따라 **정식의 재판을 청구(구공판)**할 수도 있지만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할 수도 있습니다. 가해자는 **공소 제기 전엔 피의자**, 공소가 제기되면 **피고인**으로 불립니다.

- **약식명령**이란 비교적 경미한 범죄(**벌금 이하의 처벌**)에 대하여 검사가 약식으로 기소(**구약식**)한 경우 법원이 사건에 대한 자료(서류, 기록)만 보고 결정을 내리는 것입니다. 검사의 청구(구약식)가 있어야만 법원은 약식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전과가 없는 초범자들에 대하여 약식기소(구약식)가 이루어집니다. 검사의 구약식 결정에 따라 법원이 약식명령을 내릴 때는 별도의 재판없이 **가해자에 대해 벌금형 처분**이 이루어집니다.

- 다만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구약식)한 경우에도 **법원**은 약식명령이 불가능 또는 부적절한 경우 직접 정식재판절차로 전환할 수 있고, **피고인** 또한 약식명령에 불복하여 정식 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피해자는 법원에 직권으로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탄원할 수 있을 뿐, 직접 정식재판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나

불기소 결정

*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5조, 제117조, 형사소송법 제247조 및 제51조,

- 검사는 다음 다섯 가지 이유를 들어 불기소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 ▶ **기소유예** 검사는 범죄 혐의가 인정되고 소송조건이 구비되어 있더라도 범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참작하여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혐의없음** 검사는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않거나 피의사실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혐의없음

(증거불충분) 처분을 합니다. 검사의 혐의없음 결정이 있는 경우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가 판단됩니다.

- ▶ **죄가안됨** 피의사실이 인정되더라도 피의자의 행위가 정당행위나 정당방위에 해당하거나, 피의자가 형사미성년자, 심신상실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 범죄를 구성하지 않게 되어 죄가안됨 결정을 합니다.
- ▶ **공소권없음** 검사는 공소시효가 완성되거나 범죄 후 법령 개정 등으로 형이 폐지됐거나 피의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유가 있을 때 공소권없음 결정을 합니다.
- ▶ **각하** 검사는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위 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의 사유가 명백하거나, 이미 다른 검사가 불기소결정을 했거나, 수사를 개시할만한 자료가 없는 경우 등과 같은 사유가 있을 때 각하 결정을 합니다.

- 그러나 현실적으로 전문가가 아닌 피해자가 위 결정 이유만 보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파악하기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피해자는 검사가 불기소 결정을 내린 경우 왜 불기소 결정을 내렸는지 그 이유를 자세히 알려달라고 검사에게 요구하여 그 사유를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불기소이유서 열람복사 신청**). 이때 불기소이유서에 적힌 검사의 불기소 이유는 이후 검사의 불기소 판단을 재차 다뤄보는 항고 및 재정신청 단계에서 매우 중요한 판단 근거가 되니 조금 번거롭더라도 **불기소 결정이 나면 꼭 불기소이유서 열람복사 신청을 통해 확인**해보아야 합니다.

- 불기소이유서를 꼼꼼히 읽어본 후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다룰지 다루지 않을지 결정해야 합니다. 다만 이때 두 가지를 주의해야 하는데, 첫 번째로 **고소를 하지 않은 피해자는 불기소 결정을 다뤄보는 항고 및 재정신청 절차를 신청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수사기관이 기소하지 않겠다고 판단한 결정을 뒤집어야 하는데 **피해자가 이 단계를 법률전문가 도움이 없이 혼자서 진행해서 성공하기 쉽지 않다**는 점입니다.

- **따라서 불기소결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경우에는 변호사 및 성폭력 상담소 등 전문성을 가지고 피해자를 지원한 경험이 있는 외부의 조력을 받는 것을 적극적으로 권장합니다.**

4 항고와 재정신청



-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피해자가 불복하는 방법은 크게 **(i) 검찰에 대한 항고 및 재항고**와 **(ii) 법원에 대한 재정신청 및 헌법소원**이 있습니다.

* **고소한 피해자**는 검사의 불기소 결정에 대해 **30일 이내에 항고**를 할 수 있고, 항고 결과에 불복한다면 **10일 이내에 재정신청**을 할 수 있으며, 재정신청 결과에도 불복한다면 **7일 이내 즉시항고**를 할 수 있습니다.

* **고소하지 않은 피해자**는 항고, 재정신청, 즉시항고를 통해 검사의 불기소 결정을 다룰 수는 없고 다만 공권력으로 인해 피해자의 기본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헌법소원**을 통해 다뤄볼 수 있습니다.

- 다만 위 절차를 통해 다시 다룰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이미 내려진 수사기관의 결정을 바꾸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검사의 불기소 처분을 다루기 위해 항고, 재정신청, 헌법소원 등을 고려하고 계신 피해자 분께서는 법률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진행하기를 강력히 권해드리는 바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수사단계가 마무리되었고 곧 재판이 시작됩니다.

사안마다 다르지만 재판 역시 오랜 기다림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기억하세요. **형사절차는 언젠가 반드시 끝납니다.**

그러니 이제 천천히 당신의 일상을 회복해 나가세요.

몸과 마음을 잘 챙기고, 주변에 도움을 요청하세요.

힘들 때면 첫 페이지로 돌아가 마음을 다잡는 것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당신이 다시 새로운 일상을 되찾길 진심으로 응원하고 격려합니다.





성폭력 피해자를 위한 수사절차 가이드북
피해자 노트

발행일 2024년 9월 20일
발행 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공익법률센터
기획 마태영
집필 마태영 정이랑
자문 연대자D

본 저작물의 저작권은 집필진에 있으며 동의 없이 무단으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피해자노트는 온라인(<http://slcc.snu.ac.kr>)에서도 이용 가능합니다.

1. 준비 단계

- 여성가족부_가까운 시설찾기
https://www.mogef.go.kr/inc/fs_fsc_s003.do?mid=fsc300
- 한국여성인권진흥원_지원기관 현황
<https://www.stop.or.kr/home/kor/M522235698/support/network/index.do?>

2. 수사 단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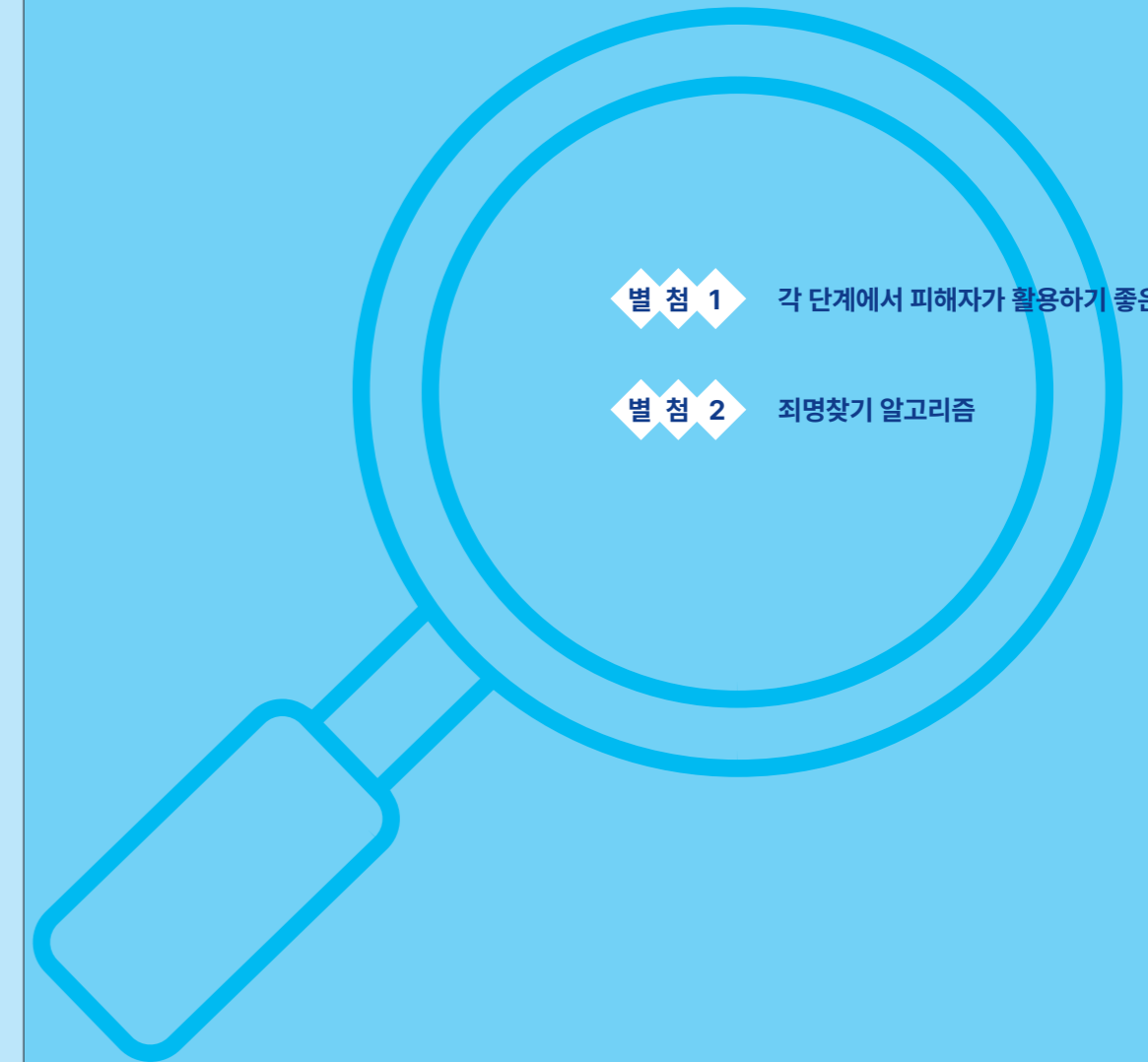
사이트	어디에 활용하나요?	
	경찰 수사 단계	검찰 수사 단계
정보공개포털 https://www.open.go.kr/	고소장 공개청구 피해자 진술조서 공개청구 피해자 제출기록 공개청구 불송치결정서 등 공개청구	-
형사사법포털 https://www.kics.go.kr/	사건조회 범죄피해자 지원	사건조회 불기소이유 고지 청구 사건기록 열람·복사 신청 항고기각증명·이유 고지 청구 진정서·탄원서 제출 범죄피해자 지원
경찰민원포털 https://minwon.police.go.kr/	수사기관 기피신청 수사이의신청	-
국민신문고 https://www.epeople.go.kr/	각종 민원 제기	각종 민원제기

3. 그 외 기타 (범죄 피해자 지원 제도 관련)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pdf)
경찰청 사이트 → 신고/지원 → 치안정보/지원 → 회복적경찰활동 및 범죄피해자지원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안내서 바로가기
<https://www.police.go.kr/www/security/support/support01/support04.jsp>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안내
법무부 사이트 → 법무정책서비스 → 인권 → 범죄피해자 보호·지원제도(법무부 범죄피해자 보호·지원 제도 사이트)
<http://www.moj.go.kr/cvs/index.do>

별첨 1 각 단계에서 피해자가 활용하기 좋은 사이트 모음

별첨 2 죄명찾기 알고리즘



별첨 2 **죄명찾기 알고리즘**

• 아래의 내용은 비전문가인 피해자가 스스로 고소장 작성 시 죄명을 기재하는 데에 참고할 수 있도록 개략적으로 정리한 것입니다.
구체적인 범죄사실 및 수사관의 판단 등에 따라 실제 죄명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장애가 없는 성인 피해자와 관련된 범죄행위의 죄명을 정리한 것입니다.
아동, 청소년, 장애인인 피해자의 경우 강화된 다른 법률이 적용됩니다.

형: 형법
성폭: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성적 불쾌감/수치심이 드는 신체적 접촉이 있었을 때

